

승강기유지관리업

■ 업무내용

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, 수리, 교체를 통한 안전관리 활동

· 고속승강기 :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

· 중저속승강기 :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

■ 등록기준

1. 기본금

| 법인 | 개인 |
|--------|--------|
| 1억원 이상 | 1억원 이상 |

2. 기술능력

1) 고속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

총 9인 이상 (책임기술인력1인, 일반기술인력 8인)

◆ 책임기술인력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

1.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2.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3.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
4.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5.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
6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
7.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

◆ 일반기술인력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8명 이상

1.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2.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3.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4.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5.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6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
7.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

2) 중저속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

총 7인 이상 (책임기술인력 1인, 일반기술인력 6인)

◆ 책임기술인력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

1.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2.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3.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
4.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
5.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
6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
7.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

◆ 일반기술인력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

1.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2.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
3.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
4. 기계·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
5. 기계·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
6.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
7.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8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·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
9.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하며,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시설·장비

사무실
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
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| 업종 | 장비 |
|--------|---|
| 고속승강기 | - 금속 줄자, 테이퍼형 틈새게이지, 아들자 캘리퍼스, 전압계, 전류계, 절연저항계, 밝기측정기, 순간식 회전속도계, 전기회로시험기, 감속도 측정기,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, 토크렌치, 소음진동측정기, 표면온도측정기,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, 분동 3톤 (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) |
| 중저속승강기 | |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10일 이내 소요